

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05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12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개정사유

가.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하수처리 원가 이하로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요금을 인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업종별(업무용, 영업용, 옥탕용) 사용구분에 따른 누진체계를 조정하고, 하수도 사용료 33.18% 인상함.(안 별표 1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구분 업종	사용요율	
	사용구분 (m ³ /월)	m ³ 당 단가 (원)
가 정 용	1~10	250
	11~20	400
	21~30	440
	31~40	590
	41~50	680
	51이상	1,160
업 무 용	1~100	360
	101이상	730
영 업 용	1~100	830
	101이상	1,660
옥 탕 용	1~1,000	360
	1,001~3,000	730
	3,001이상	1,090
산 업 용	1m ³ 당	630

※ 비고: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다음 달 검
침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수시 수납분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 (제12조제2항)</p> <p>1.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 업종</th> <th colspan="2">사 용 요 율</th> </tr> <tr> <th>사용구분 (m³/월)</th> <th>m³당 단가 (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6">가 정 용</td> <td>1~10</td> <td>190</td> </tr> <tr> <td>11~20</td> <td>300</td> </tr> <tr> <td>21~30</td> <td>330</td> </tr> <tr> <td>31~40</td> <td>440</td> </tr> <tr> <td>41~50</td> <td>510</td> </tr> <tr> <td>51이상</td> <td>87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업 무 용</td> <td>1~20</td> <td>250</td> </tr> <tr> <td>21~50</td> <td>310</td> </tr> <tr> <td>51~100</td> <td>530</td> </tr> <tr> <td>101~300</td> <td>56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영 업 용</td> <td>301이상</td> <td>580</td> </tr> <tr> <td>1~30</td> <td>530</td> </tr> <tr> <td>31~50</td> <td>610</td> </tr> <tr> <td>51~100</td> <td>860</td> </tr> <tr> <td>101~500</td> <td>1,24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육 탕 용</td> <td>501이상</td> <td>1,390</td> </tr> <tr> <td>1~500</td> <td>210</td> </tr> <tr> <td>501~1000</td> <td>420</td> </tr> <tr> <td>1001~3000</td> <td>530</td> </tr> <tr> <td>산 업 용</td> <td>3001 이상</td> <td>680</td> </tr> <tr> <td>산 업 용</td> <td>1m³당</td> <td>47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)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 요율을 적용함.</p>	구분 업종	사 용 요 율		사용구분 (m ³ /월)	m ³ 당 단가 (원)	가 정 용	1~10	190	11~20	300	21~30	330	31~40	440	41~50	510	51이상	870	업 무 용	1~20	250	21~50	310	51~100	530	101~300	560	영 업 용	301이상	580	1~30	530	31~50	610	51~100	860	101~500	1,240	육 탕 용	501이상	1,390	1~500	210	501~1000	420	1001~3000	530	산 업 용	3001 이상	680	산 업 용	1m ³ 당	470	<p>[별표 1]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 (제12조제2항)</p> <p>1.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 업종</th> <th colspan="2">사 용 요 율</th> </tr> <tr> <th>사용구분 (m³/월)</th> <th>m³당 단가 (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7">가 정 용</td> <td>1~10</td> <td>250</td> </tr> <tr> <td>11~20</td> <td>400</td> </tr> <tr> <td>21~30</td> <td>440</td> </tr> <tr> <td>31~40</td> <td>590</td> </tr> <tr> <td>41~50</td> <td>680</td> </tr> <tr> <td>51이상</td> <td>1,16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업 무 용</td> <td>1~100</td> <td>360</td> </tr> <tr> <td>101이상</td> <td>73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영 업 용</td> <td>1~100</td> <td>830</td> </tr> <tr> <td>101이상</td> <td>1,66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육 탕 용</td> <td>1~1000</td> <td>360</td> </tr> <tr> <td>1001~3000</td> <td>730</td> </tr> <tr> <td>3001 이상</td> <td>1,090</td> </tr> <tr> <td>산 업 용</td> <td>1m³당</td> <td>63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비고: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 요율을 적용함.</p>	구분 업종	사 용 요 율		사용구분 (m ³ /월)	m ³ 당 단가 (원)	가 정 용	1~10	250	11~20	400	21~30	440	31~40	590	41~50	680	51이상	1,160	업 무 용	1~100	360	101이상	730	영 업 용	1~100	830	101이상	1,660	육 탕 용	1~1000	360	1001~3000	730	3001 이상	1,090	산 업 용	1m ³ 당	630
구분 업종		사 용 요 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용구분 (m ³ /월)	m ³ 당 단가 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 정 용	1~10	1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1~2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1~30	3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1~40	4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1~50	5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1이상	8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업 무 용	1~20	2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1~50	3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1~100	5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1~300	5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 업 용	301이상	5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~30	5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1~50	6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1~100	8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1~500	1,2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육 탕 용	501이상	1,3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~500	2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01~1000	4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01~3000	5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 업 용	3001 이상	6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 업 용	1m ³ 당	4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 업종	사 용 요 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용구분 (m ³ /월)	m ³ 당 단가 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 정 용	1~10	2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1~20	4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1~30	4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1~40	5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1~50	6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1이상	1,1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업 무 용	1~100	3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1이상		7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 업 용	1~100	8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1이상	1,6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육 탕 용	1~1000	3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01~3000	7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001 이상	1,0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 업 용	1m ³ 당	6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□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</p> <p>○ 제18조(요금의 산정방식)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.</p> <p>□ 「하수도법」</p> <p>○ 제65조(사용료 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.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